

## 우리나라 工業所有權制度 主要内容(2)

(前號에서 계속)

### 3. 工業所有權의 種類

우리나라 工業所有權法의 대표적인 特許法은 그 第1條(目的)에 “이 法은 發明을 獎勵, 保護, 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歩 發展을 도모하고 國家産業의 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工業所有權保護의 趣旨를 集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世界 各國은 이러한 工業所有權保護의 趣旨를 自國의 利益에 關聯시켜 細部的인 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工業所有權을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및 商標權등 네가지로 나누어 保護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네가지 權利중 實用新案權은 日本과 함께 世界的으로 10여개국 정도의 나라에서만 採擇하고 있는 制度이고, 商標權의 내용도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1) 特許權

##### (1) 特許權의 意味

特許法 第2條는 “新規의 發明을 한 者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 第5條는 “이 法에서 發明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의 것을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特許權이란 特許法上 發明에 대하여 法令에 의한 審査를 거쳐 獨占排他的인 權利를 許與한 것으로 高度의 技術을 말한다.

예를들면 電話機나 전구등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技術的 水準이 高度의 것이라야 特許權을 받을 수 있다. 特許權을 받은 사람은 15년간 그 權利를 獨占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不特許 事由

特許權은 發明에 대하여 주어지는 權利이지만 모든 發明에 特許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特許法도 이에 대한 規定을 두고 있는데, 이를 不特許事由라고 한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음식물과 기호물의 發明

음식물이나 기호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없어서는 아니되는 必需品이므로 이에 관한 發明을 어느 特定人에게 特許하게 되면 一般國民들이 그러한 物品을 購入하는데 있어 數量과 價格에 대한 制約을 받게 되어 食生活에 대한 위협까지도 받게 될 것이므로 公益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特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물이나 기호물 그 自體가 特許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製造하는 方法에 관한 發明은 特許를 받을 수 있다.

② 原子核 轉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우리나라 原子力産業의 技術水準이나 技術開發力은 先進工業國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外國에 앞서 새로운 物質을 發明한다는 것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時機尙早이고, 또 가령 이 種類의 特許가 外國人에게 特許되었을 경우에는 外國人에 의한 特許지배를 받을 염려가 있는 등 産業政策의 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特許하지 않는다.

③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紊亂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해할 염려가 있는 發明  
 이러한 發明은 그것이 科學技術과 産業의 發展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獨占의 으로 사용하도록 國家가 保障해 준다면 그로 인해 社會秩序가 어지럽혀지고 國民의 衛生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公益을 증시하여 特許하지 않는다.

### (3) 特許要件

위에서 特許를 받을 수 없는 不特許事由를 說明했다.

그러나 이 不特許事由에 해당되지 않는 發明이라도 다음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特許權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特許要件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新規性

特許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 公언히 實施된 發明 및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發明은 新規性이 없으므로 特許를 받을 수 없다.

#### ② 進歩性

特許出願前에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사람이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公언히 實施된 技術 및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技術에 의하여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發明이 新規性이 있더라도 特許를 받을 수 없다.

#### ③ 産業上 利用 可能性

産業에 利用할 수 있다고 함은 反復再生産에 의한 多量生産을 할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술·조각·서예등과 같이 同一物品의 製作이나 生産이 不可能하거나 장기간의 作業에 의해 小量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産業上 利用可能性이 없으므로, 그 發明이 新規성과 進歩성이 있더라도 特許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産業이라 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工業뿐 아니라 商業·鑛業·農業등 각종 製造 및 加工業과 採取産業이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特許에 관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特許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무런 制約이 없이 特許 發明을 實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즉 藥品이나 食品의 경우는 보건사회부, 工業品은 公업진흥청등 관계기관의 許可나 承認을 받아야 製品의 生産이 可能하다. (계속)

## (案) 工業所有權 相談室 운영 (內)

◎ 相談日時: 每日 10:00~16:00  
 (土요일은 10:00~12:00)

◎ 相談料: 無料

◎ 相談依頼者: 本會 會員企業(非會員일 경우 特請에 限함)

◎ 相談分野 및 範圍

- 1) 出願·異議申請·登錄節次 및 要領
- 2) 工業所有權紛爭의 豫防 및 事後處理
- 3) 社內 特許管理要領·職務發明補償制度 運用方案

- 4) 工業所有權 實施斡旋 및 活用
- 5) 企業內 工業所有權專擔機構設置方案
- 6) 其他 工業所有權에 관한 諸般事項

◎ 結果處理

- 1) 相談依頼會員社에 直接 回答
- 2) 相談에 關聯되는 秘密事項은 保障되며 公開可能한 事項은 本會 會誌 또는 文庫輯으로 刊行 配布

◎ 相談處: 本會 發明振興部 및 調査資料部  
 (557-1077~8, 568-8263·8267)

本會  
 新刊

## 職務發明補償制度考察

국판 200면 · 가격 3,000원